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98 발의연월일: 2024. 7. 22.

발 의 자:이양수·조경태·박준태

김선교 • 박덕흠 • 강선영

이철규 • 이헌승 • 배준영

이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일정 경영규모 이하의 어업인에 대하여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이하 "직불금"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어촌에 거주할 것을 지급요건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음.

그리고 "어촌"에 대해서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를 준용하여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면의 전 지역이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하 "상업·공업지역"이라함)을 제외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어항의 배후에 있는 일부 지역의 경우 상업·공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본인이 소유한 어선의 선적항(船籍港) 인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이 어촌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현행법 기준으로 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상업·공업지역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어촌으로 인정하여 어업인 간 형평성을 제고 하고 어업인 소득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법률 제 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 • 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 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다.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 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하여 다른 법

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2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어촌"이란 「수산업·어촌</u>	2.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
따른 어촌을 말한다.	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 • 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다.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가
	목 및 나목에 해당되지 않
	는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u>지역</u>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